

2026년 제4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4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전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속기	지방속기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의회사무국 (의사팀)	▪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속기, 회의록 작성 ▪ 회의록 발간, 배부 및 보존·열람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직무 관련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자 격 요 건
속 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근무기간

-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 연장 계획 없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요일, 1일 8시간)

5.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연봉액을 정하되, 직무비중·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
-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하한액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지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7호봉 상당 연봉액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속기서기보(일반임기제)	54,678천원	32,477천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1.(월)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 방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수입증지를 붙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 전주시 수입증지(9급 : 5천원)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 등기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4회 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 시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9월 21일)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수수료 면제,
수입증지(방문)나 통상환증서(등기) 대신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접수

면제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접 수 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4층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
(우편번호 54994)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6. 9월중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6. 9월중 예정	전주시의회 (예정)	2026. 10월중 예정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일시·장소 개별통보)		

다.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A4 10매 이내 자유롭게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시)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해당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발급)

* 9급 : 5천원, 정부수입증지 X, 전주시 수입증지 / 등기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9. 기타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의정팀(☎063-230-3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